

제 호

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

성명		생년월일	
자격증명번호			
갱신기간			

「철도안전법」 제2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6에 따라 위와 같이 관제자격증명을 갱신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

직인

유의사항

갱신기간에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「철도안전법」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(실효)됩니다.